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19. 7. 10. (수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최경분

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19년 7월 1일
- 회부일자: 2019년 7월 3일

## 3. 제안이유

- 학생대표의 회의 참석을 통한 학생 의견 수렴, 위원의 임기 개시일 구체화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학교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

## 4. 주요내용

- 위원의 임기개시일 구체화(안 제4조)
- 정당인의 자격제한 규정 삭제(안 제5조)
- 학생(자녀)이 졸업하는 학부모위원의 자격상실 시기 조정(안 제7조)
- 학생대표의 회의 참석 근거 마련(안 제9조의2)
- 학교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(안 제10조의2)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의4에 따라 학생대표의 ‘제안’ 과 ‘회의 참석 및 의견 청취’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1조에 따른 ‘시정명령’ 을 학교운영위

원회가 의결로 관할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, 학교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

- 안 제9조의2제2항에서는 ‘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’ 등 8개 항목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서는 ‘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’에 관하여 학생 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안 제10조의2에서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1조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로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‘시정명령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아울러, 학교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‘4월 1일’로 명시하고,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,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는 학교운영위원 직을 유지하도록 하였음
-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같은 바람직한 취지를 담고 있고,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점에 비추어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됨